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저축보험

2. 보험의 세목

월 공시이율형, 연 공시이율형

3.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0년만기	3년납	만 15세 ~ 61세	월납
	5,7년납	만 15세 ~ 65세	
	전기납	만 15세 ~ 58세	
15년만기	3,5,7,10년납 전기납	만 15세 ~ 66세	
20년만기	3년납	만 15세 ~ 64세	
	5년납	만 15세 ~ 69세	
	7, 10, 15년납	만 15세 ~ 70세	
50세만기	3,5,7년납	만 15세 ~ 40세	
	10년납	만 15세 ~ 37세	
	15년납	만 15세 ~ 32세	
60세만기	3,5,7년납	만 15세 ~ 50세	
	10년납	만 15세 ~ 47세	
	15년납	만 15세 ~ 42세	
70세만기	3,5,7년납	만 15세 ~ 60세	
	10년납	만 15세 ~ 57세	
	15년납	만 15세 ~ 52세	
80세만기	3년납	만 15세 ~ 65세	
	5,7,10년납	만 15세 ~ 67세	
	15년납	만 15세 ~ 62세	

※ 10년만기 전기납의 경우,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의 구분

1)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2)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나. 보험료 납입 한도

1) 기본보험료

월 보험료 50만원 이상

2) 추가납입보험료

(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 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나) ‘(가)’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국고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가)’ 의 한도를 적용한다.

3) ‘1)’ 및 ‘2)’ 에도 불구하고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한도에서 제외한다.

6.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일시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일시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일시중지기간”이라 함)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에도 동일하게 납입 일시중지가 적용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전기납인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다.
- 나. ‘가’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된다.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 다.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하며,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아니한 특약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한 특약보험료는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제외하고 주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투입되어 적립된다.
- 라.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주계약의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함. 이하 동일]를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시에 공제한다.
- 마.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이내로 하고, 신청 1회당 12개월(신청시점에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최고한도로 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 횟수는 3회를 최고한도로

한다. 다만,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납입일시중지신청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7.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나. 1회당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다. 회사는 인출시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라. ‘나’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하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이라 한다)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고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8. 생활자금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생활자금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계약에 한하여 생활자금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생활자금인출 신청시 월지급 또는 연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월지급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생활자금인출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매월 계약해당일(만기시점 제외)에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연지급을 선택한 경우 회사는 생활자금인출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만기시점 제외)에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라. 생활자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이자 해당액으로 계약자적립금(생활자금 인출 이전에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발생한 해당 기간의 이자금액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비용(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마. 계약자가 미수령한 생활자금은 만기시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하며, 만기시에 만기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9.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부리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월 공시이율형의 경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고, 연 공시이율형의 경우 계약건별로 보험계약일부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한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월 공시

이율 또는 연 공시이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 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90% ~ 110%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text{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end{aligned}$$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beta 1$), 회사채 가중치($\beta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gin{aligned}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end{aligne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 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해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한다.

사. 공시이율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0.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다.

나.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11.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

월납 기본보험료 × 12 × Min{보험료납입기간, 10}

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다. 연체이자율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라. 선납보험료

- 1)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2)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해당일에 대체한다.

마. 고액계약할인에 관한 사항

매월 기본보험료가 100만원 초과인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0%

바. 장기납입보너스 적립에 관한 사항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60회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납입시(선납시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 실제 납입한 납입회차를 기준으로 아래 장기납입보너스 해당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납입회차	장기납입보너스 금액
61회차 이상	기본보험료의 0.5%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아.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

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한다.

- 2) '1)' 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모집수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예정신계약비 대비 90%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자.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